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213) 389-2077  
 For California Relay Service TTY: (800) 735-2929  
 www.mhas-la.org



공정 주거(FAIR HOUSING):  
 바로 그 법!

*A nonprofit organization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legal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이 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 팁 #7 – 보복은 차별 행위입니다.

**세입자:** "몇 달 전, 저의 임대인이 정서적인 지원 동물에 대한 저의 신청을 거절했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법에 따라 그가 정서적인 지원 동물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 행위라고 말했었지요. 그는 마침내 저의 요청을 승인하였지만, 그 이후, 그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는 공동의 장소에 나의 개를 풀어 놓았다거나 보수 공사 중인 업자를 몰았다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편지를 여러 번 보냈었 거든요. 그는 저의 개가 위험하니 저를 퇴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퇴거 기록이 내 기록에 남지 않도록, 그가 퇴거 시키기 전에 제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여기에 사는 것이 정말로 스트레스라고 느껴지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강요, 위협, 협박하거나 세입자의 주거권을 행사 또는 향유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세입자가 주거권을 향유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협을 통한 퇴거 조치, 괴롭힘, 또는 해당 아파트 유닛과 관련된 생활 편의 시설을 없애는 등의 보복 행위는 공정 주거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공정 주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Complaint)을 접수 하였다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공정주거권을 행사하라고 독려했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위협, 협박, 또는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귀하께서 임대인이 귀하가 정당한 편의 제공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면, 주거 차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고발을 접수하실 때, 보복 행위에 대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귀하가 겪으신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서 사본, 온라인으로 대화한 기록을 보관하시고, 임대인의 위협, 협박, 기본적인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방해 사실을 보여주는 임대인과의 대화 또는 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시면 위와 같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역 공정 주거 기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미국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HUD)에 불만(complaint)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UD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http://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 표시는 연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사항:** 공정 주거법 이 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인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MHAS, 지역 공정주거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 이달의 팁은 HUD 의 주거 및 도시개발 공정 주거 프로그램(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80041-01-00)으로 제공됩니다.